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신체 이미지 촬영·저장 행위 등 처벌〉

■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261호)

2026.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윤 상 열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신체 이미지 촬영·저장 행위 등 처벌	3
가. 개정안 관련 대법원 판례	6
나. 검토의견	10
다. 관계기관 의견	1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김남희의원 등 16인

나. 제 안 일 : 2026. 4. 10.

다. 회 부 일 : 2026. 4.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대법원 2024도10477 판결을 통해 피해자의 신체를 범인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신체 이미지’를 전송받아 이를 저장한 경우에는 현행법 제14조제1항의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음.

이와 같은 판결의 영향으로, 디지털 기기가 고도화된 현 사회의 상황을 반영하여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전송받은 신체의 이미지를 저장하는 등의 경우도 불법촬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거울 등 다른 물체에 반사되거나 모니터나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통하여 표시되는 화상 또는 영상 속의 신체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저장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등).

III. 검토의견

1. 신체 이미지 촬영·저장 행위 등 처벌

- 개정안은 현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것 외에, 거울 등에 반사되거나 모니터 등에 표시되는 화상 또는 영상 속의 신체 이미지를 촬영·저장한 자 역시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생략) <u><신설></u>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현행과 같음) ② <u>거울 등 다른 물체에 반사되거나 모니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통하여 표시되는 화상 또는 영상 속의 신체 이미지(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유발하는 것에 한정한다)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자적으로 저장하거나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촬영물(제2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저장된 신체 이미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5항, 제14조의3제1항, 제22조의2제2항제3호가목 및 제23조의2제1항제1호에서 같다) 또는-----제1항·제2항의 촬영(제2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 -----제3항의 죄-----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현행	개정안
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 -----. ⑥ -----제1항부터 제4항 ----- -----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개정안 관련 대법원 판례

- 최근 대법원은 “2024도10477” 판결을 통하여, 현행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하고, 영상통화 중에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녹화·저장한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음.

< 대법원 2024도10477(2024. 10. 31.) 판결 주문 및 이유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고,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위 조항이 정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해자 신체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자료: 대법원 판례검색

□ 이는 종래 “2013도4279” 판결에서 컴퓨터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를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것은 신체 그 자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항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대법원 2013도4279(2013. 6. 27.) 판결 주문 및 이유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촬영”의 사전적·통상적 의미는 “사람, 사물, 풍경 따위를 사진이나 영화로 찍음”이라고 할 것이고, 위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보아야 함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 규정의 처벌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스스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화상카메라에 비추었고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상의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피고인의 컴퓨터에 전송되었으며, 피고인은 수신된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된 것을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통해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법 제1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검사가 주장하는 형벌법규의 목적론적 해석도 해당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위 규정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법 제13조 제1항의 해석과 입법 취지,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자료: 대법원 판례검색

□ 다만, 대법원은 영상통화로 전송된 영상정보를 상대방이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동영상은,

촬영대상자가 촬영 당시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현행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물은 아니더라도 같은 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하는 ‘촬영물의 복제물’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음.¹⁾

○ 그러나,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동영상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소지한 경우이므로, 해당 동영상이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촬영 또는 반포등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의 소지죄²⁾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 2024도16133(2025. 6. 5.) 판결 주문 및 이유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부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부분에 대하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주위적 공소사실인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부분에 대한 판단
(생략)

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소지’로 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등) 부분에 대한 판단

1) (생략)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전단과 후단의 문언, 입법 취지와 목적, 규율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그 영상정보는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가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으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전단에서 정한 ‘제1항에 따른 촬영물(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의 촬영물’에는 해당할 수 있다. 영상통화의 상대방이 이와 같이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동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한다.

3) 한편 이 사건 조항이 포함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문언과 형식,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입법 연혁,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은 불법인 성적 촬영물 등에 대한 접근이나 수요를 규제하기 위하여 그 촬영물 등의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 이후의 소지 등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정하고 있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 등’을 의미하고, 위 행위가 전제되지 않은 촬영물 등까지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옷 입는 모습을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다음 그대로 소지한 경우 그 동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촬영 또는 반포 등이 이루어진 촬영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자료: 대법원 판례검색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4조제1항에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는 취지는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³⁾

○ 그런데, 영상통화 등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비대면 접촉 상황에서 모니터 등에 표시되는 해당 신체의 이미지를 촬영 또는 저장하는 행위는 대면 접촉 상황에서 신체를 촬영한 경우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제14조제1항이 죄의 구성요건을 신체 이미지가 아닌 신체를 촬영한 자로 규정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촬영자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임.

○ 또한, 해당 신체 이미지는 촬영대상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로 볼 수는 있으나, 그 반포등을 하지 않고 단순히 촬영·저장하여 소지만 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임.

□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규정과는 별도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이미지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저장

3) 대법원, 2014도6309 판결(2014. 7. 24.)

한 자를 처벌하려는 것으로, 영상통화의 녹화 등에 대하여 현행법 제 14조제1항 등을 적용할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안 제14조제2항은 모니터 등에 나타난 신체 이미지의 촬영과 거울 등에 반사된 신체 이미지의 촬영을 동일한 죄로서 규정함.

- 그런데, 거울 등에 신체가 반사되는 경우는 전자적으로 전송된 이미지 정보가 아니라 사람의 신체가 직접 투영된 이미지를 촬영하는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신체의 촬영과 구분하여 규정할 것 인지에 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안 제14조제2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이미지의 ‘저장’을 처벌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인터넷·SNS 등에 공개된 화상·영상 속의 해당 신체 이미지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장하는 경우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는 현행법 제14조제1항을 영상통화를 녹화하는 경우 등에 적용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처벌 대상 범위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입법정책적인 고려를 거쳐 처벌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공개된 신체 이미지가 불법촬영물 또는 허위영상물등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미 현행법에서 이를 저장한 사람을 개정안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보임.⁴⁾

○ 셋째, 안 제14조제2항은 신체 이미지를 촬영한 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신체를 촬영한 자에 대한 처벌인 현행법 제14조제1항보다 낮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함.

- 그런데, 개정안의 취지가 현행법 제14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는 데 있음을 고려할 때, 촬영 대상에 따라 처벌 수준을 다르게 규정할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가 요구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안 제14조제3항은 신체의 촬영물과 신체 이미지의 촬영물의 반포등에 대하여 동일한 처벌 수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벌규정 간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 역시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른 촬영·반포등 행위 처벌 수준(안)〉

구분		촬영(제1항·제2항)	촬영물 반포등(제3항)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징역) <u>7년</u> 이하 (벌금) <u>5천만원</u> 이하	(징역) <u>7년</u> 이하 (벌금) <u>5천만원</u> 이하
	신체 이미지	(징역) <u>3년</u> 이하 (벌금) <u>3천만원</u> 이하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한편, 개정안은 영상통화의 녹화 등의 경우에 현행법 제14조에 따라 처벌하기 어려운 문제를 별도의 항을 신설하여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나, 해당 문제를 기존 항을 개정하여 해결할 수는 없는지에 관한 검토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관계기관의 의견

- 법원행정처는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전자적으로 저장’ 등과 같은 안 제14조제2항의 구성요건이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우려가 있지는 않은지에 대하여 보완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성평등가족부는 개정안이 처벌하려는 행위가 현행법 제14조제1항의 불법촬영물 및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부족하여, 이들과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059